

법률 제14691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3조의 제목 "(특허표시)"를 "(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"특허표시"를 "'특허'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특허표시"를 "'방법특허'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(이하 "특허출원표시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: 그 물건에 "특허출원(심사중)"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
2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: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"방법특허출원(심사중)"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7조제1항 중 "1천만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

제228조 중 "2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

제229조 중 "2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허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